

#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(김평남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506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05월 28일

발 의 자 : 김평남 의원(1명)

찬 성 자 : 권영희, 김경영, 김경우,  
김인호, 김재형, 김제리,  
김종무, 김태수, 김희걸,  
박기열, 박기재, 박상구,  
박순규, 송명화, 송아량,  
송정빈, 신정호, 양민규,  
이영실, 이정인, 이태성,  
임종국, 장상기, 전병주,  
전석기, 최 선, 최웅식,  
홍성룡, 황규복 의원(29  
명)

## 1. 제안이유

- ‘애완동물’과 ‘애완견’ 용어는 「동물보호법」 상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, 고양이 등을 ‘반려동물’로 정의하고 있음에도, 여전히 ‘애완동물’과 ‘애완견’이라는 표현으로 잔존해 있음.
- 또한, ‘반려동물’이라는 용어는 1983년 10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‘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관한 국제 심포지움’에서 ‘애완동물’이란 말 대신 사용하기로 제안되어, 현재 미국·유럽·일본 등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널리 사용 중임.
- 이에 1,000만 명을 넘어선 반려인구의 증가와 국민정서의 눈높이를 고려하여 반려동물에 관한 부적합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한강공원 금지행위에 대한 규정 중 ‘애완동물’ 용어를 ‘반려동물’로 개정함.(안 제17조제1항제3호)

나. 한강공원 금지행위에 대한 규정 중 ‘애완견’에 대한 용어를 ‘반려견’으로 개정함.(안 제17조제1항제5호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동물보호법」,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1항제3호 중 “애완동물”을 “반려동물”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 중 “애완견”을 “반려견”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7조(금지행위) ① 누구든지 한강공원 구역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</p> <p>1. ~ 2. (생 략)</p> <p>3. 동반한 <u>애완동물</u>의 배설물(소변의 경우에는 시설물 위의 것에 한한다)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</p> <p>4. (생 략)</p> <p>5. 동반한 <u>애완견</u>을 통제 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는 행위</p> <p>6. ~ 15. (생 략)</p> <p>② (생 략)</p>	<p>제17조(금지행위) ①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<u>반려동물</u>----- ----- -----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-----<u>반려견</u>----- ----- -----</p> <p>6. ~ 1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